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규정

개정 기록표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1	2019.12.27		16		
2	2025.8.13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이하 ‘센터’)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교내 취·창업 부문을 총괄하는 허브기능을 확립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2025.8.13.>

제2조(역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센터의 역할을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는 노동시장 진입 이전단계인 대학생(청년)에 대한 진로지도, 취업지원 강화 등을 통해 학교와 노동시장 간에 원활한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2. 센터는 한국항공대학교와 고용노동부, 고양시 간에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여 ‘센터’사업을 수행한다.

제3조(적용범위)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약정서’에 따르고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5.8.13.>

제4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과 연계·협력
2. 재학생 및 졸업생 취·창업지원
3. 취업상담, 진로지도, 취업역량강화, 취업알선, 청년고용정책 홍보 등 청년층 취업지원
4.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5조(조직) ① 센터 사업을 수행하는 책임자로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으로 보하고, 대외적으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부센터장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에는 학생경력개발팀을 두며, 학생경력개발팀장은 부참사(사서부참사)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2019.12.27>

제6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의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제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센터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

⑥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학생경력개발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12.27>

제7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가(고용노동부)로부터의 지원금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지원금<개정 2019.12.27>
3. 한국항공대학교(교비)의 지원금

제8조(지원금 관리 및 회계적용) 이 사업에 수반되는 지원금 관리 및 회계업무는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시행지침’ 및 본교 재무회계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8.13.>

제9조 (준용) 이 규정과 시행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8월 13일부터 시행하되, 202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